

02



노인복지와 장기요양제도

학습목표

-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의 개념, 목적, 실천원칙,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요양보호의 업무목적, 서비스 제공원칙,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1절 사회복지와 노인복지

1.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사회복지(social welfare)는 어의적으로 보면 사회구성원 모두가 평안하고 만족스럽게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욕구, 사회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더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려는 전문적 노력과 관련된 사회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범위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일반 국민과 지역사회의 보편적 욕구충족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확대되어 왔다.

- 인간의 욕구 : 인간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의식주, 문화, 여가 활동 및 인간관계 등에서 나타나는 바람직하고 만족한 상태에 대한 욕구이다.
- 사회문제 : 어떤 사회적 현상이 사회적 가치(또는 규범)에서 벗어나는데 상당수 사람들이 그 현상에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여 집단적 행동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말한다.

사회복지의 분야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로 구분된다.

- ① 공공부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② 사회보험 : 국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실업, 장애, 사망, 소득 상실 등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하는 제도이다.
- ③ 사회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 관련 시설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참고

사회복지의 분야(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사회보험
 - 1) 국민건강보험 :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
 - 2) 국민연금보험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
 - 3) 고용보험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
 - 4) 산업재해보상보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함.
 - 5) 노인장기요양보험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사회서비스
 -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되는 인간다운 생활 보장,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위한 개별 서비스임.
 - 아동, 청소년, 장애인, 여성, 노인, 다문화 가정 등의 대상별 서비스와 정신보건복지, 산업복지, 의료사회복지, 학교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분야별 서비스로 나뉨.



참고

고령사회 구분

- 고령화 사회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 이상 14% 미만인 국가
- 고령 사회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4% 이상 20% 미만인 국가
- 초고령 사회
전체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 이상인 국가



국민연금제도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퇴직 후 자신이 낸 보험료와 이자 및 투자수익,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연금을 받도록 설계한 사회보험제도이다. 국민연금 급여에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이 있다.

기초연금제도

국민연금이 1988년에 도입되었으나 가입하지 못한 노인인구가 많았고,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 기간이 짧고 급여 수준이 낮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4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334,810원을 지급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노인 중 퇴직 전 산업현장에서 업무상 재해(질병, 부상, 장애 등)를 입었을 경우 사망 전까지 필요한 급여를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2. 노인복지의 개념과 유형

가. 인구 고령화와 노인복지 개념

노인인구가 증가하게 된 원인은 사회경제 발전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교육 수준의 향상,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 및 영양, 안전, 위생환경의 개선 등과 같은 생활수준의 향상이다. 또한, 기계가 노동력을 대신하는 산업사회로 변화하면서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치관의 변화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하면서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율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 노인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0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7.2%로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노인인구가 14%를 넘는 고령 사회가 되었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20% 이상이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복지란 노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 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노인복지의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노인복지법 제1조).

노인이 공공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움을 받는 경우, 사회보험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는 경우, 일반 사회복지서비스와 치매 및 건강보장 서비스, 사회 및 여가 활동 지원서비스,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경우가 노인복지에 해당된다.

나. 노인복지 원칙

국제연합이 1991년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유엔의 원칙 5가지는 다음과 같다.

1) 독립의 원칙

- ①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③ 언제, 어떻게 직장을 그만둘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 ⑥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2) 참여의 원칙

- ① 사회에 통합되어야 하고, 노인복지정책의 형성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식과 기술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여야 한다.
- ②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 기회를 갖고 개발하며, 흥미와 능력에 맞는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노인들을 위한 사회운동을 하고 단체를 조직할 수 있어야 한다.

3) 보호의 원칙

- ① 사회의 문화적 가치체계에 따라 가족과 지역사회의 보살핌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 ② 최적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안녕을 유지하거나 되찾도록 도움을 받고, 질병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건강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노인의 자율과 보호를 높이는 사회적, 법률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④ 시설에서는 인간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 재활, 사회적·정신적 격려 서비스를 제공 받아야 한다.
- ⑤ 보호 및 치료 시설에 거주할 때도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4) 자아실현의 원칙

- ① 노인의 잠재력을 완전히 계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 ②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존엄의 원칙

- ① 존엄과 안전 속에서 살 수 있어야 하며, 착취와 육체적·정신적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 ② 나이, 성,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 장애, 지위에 상관없이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경제적 기여와 관계없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 노인복지사업 유형

노인복지사업의 주요 유형들을 노인요양, 치매 및 건강보장,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지원,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경로효친사상 및 노인부양의식 제고, 장사시설 설치·운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3).

1) 치매 사업 및 건강보장 사업

광역치매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병원 및 공립요양병원 사업,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및 찾기 사업, 치매공공후견사업,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노인 건강진단, 치매극복의 날 행사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요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치매안심센터

시군구 보건소가 사업의 주체가 되며, 지역주민의 인지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한, 외부 서비스 연계, 치매환자 및 가족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도록 전담 코디네이터를 1:1로 매칭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전체 돌봄 경로 관리 등을 수행한다.

사업대상은 일반 노인, 치매노인 및 가족이며 사업내용은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사업, 치매 예방·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이 있다.

(2) 치매공공후견사업

사업주체는 치매안심센터이며,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치매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단,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지원가능)이다. 지원내용은 후견심판 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공공후견인 활동비로 월 20만 원(월 최대 40만 원까지)을 지원한다.

(3) 노인실명 예방사업

사업주체는 한국실명예방재단이며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눈 검진을 하여 눈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함으로써 노인들의 실명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사업내용은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상담·재활 사업 등이 있다.

(4)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주체는 노인의료나눔재단이며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노인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국민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준하는 질환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법정본인 부담금의 최대 120만 원 한도에서 실비를 지원함) 등을 수행한다.

(5) 노인 건강진단

사업주체는 시군구 보건소이며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사업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노인건강진단 희망자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이다.

시군구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일반 건강검진, 국가암조기검진을 하고, 검진 후 유질환자의 경우 보건소의 등록관리 및 공공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방문 건강관리 또는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2)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관 설치·운영, 노인교실사업이 있다.

(1)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사업주체는 시군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며,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만 65세 이상자(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중 사업 내용에 맞는 대상자이며, 사업내용은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 선도모델(시범사업), 시장형(시장형·취업알선형·시니어인턴십·고령자친화기업)에 노인들이 참여하여 임금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2) 노인자원봉사

사업주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 노인의 경륜을 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노인자원봉사를 활성화하여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노인의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희망 노인,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이며 사업 내용은 노인자원봉사클럽(봉사단) 조직 및 운영 지원(경로당, 노인복지관 등) 등이다.

(3) 경로당

사업주체는 시군구이며 지역별 경로당을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 활동 등 노인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의 공간 및 도구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의 노인복지센터·정보센터·학대노인 지킴이센터의 기능, 건강관리·운동·교육·여가·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독거노인 생활교육 장소, 지역사회 독거노인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한다.

(4) 노인복지관

사업주체는 시군구이며, 시군구별로 지역 실정에 따라 1개소 이상의 노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여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 참여활동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여가복지를 증진하는 사업을 한다.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며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예방, 취약노인 케어 기반구축 및 확충, 활동적인 노후를 위한 사회참여 여건 조성 및 활성화, 안정적 노후를 위한 소득보장의 다양화와 내실화를 통해 성공적인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한다.

(5) 노인교실

사업주체는 시군구이며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 건강유지·소득보장·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사업대상은 60세 이상의 자이며 사업내용은 취미·여가, 건강, 교양, 사회참여 프로그램 등 운영이다.

3) 노인돌봄 및 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양로시설 사물인터넷(IoT)활용 비대면 돌봄 시범사업,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운영,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 예방 교육 및 인권교육,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폐지수집노인 발굴·보호사업 등이 있다.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주체는 시군구와 수행기관이며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또는 ③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로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특화서비스)이다.

사업내용은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 - 신체 - 정신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대상자 군을 결정하고 군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 등이 달라진다. 중점돌봄군은 월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를 제공하고, 일반돌봄군은 월 16시간 미만 직접서비스 + 연계서비스(필요시) + 특화서비스(필요시)를 제공한다. 직접서비스는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연계서비스는 민간후원 자원 연계, 특화서비스는 맞춤형 사례관리 및 집단활동제공이다.

(2)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주체는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원, 소방서이고,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댁내장비를 설치하여 화재사고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이며 사업내용은 응급상황 자동신고, 대상자 활동 및 상태정보전송,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대상자 관리 등이다.

(3)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서비스

사업주체는 시·군·구이고 공동생활공간 운영을 통한 독거노인 고독사·자살 예방 및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중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이며 사업은 개별 공동생활홈의 유형 및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며 안부확인 및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밀반찬 배달 및 자원봉사·민간후원 연계, 건강·여가프로그램 및 일자리 제공 등을 수행한다.

(4)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주체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이며 노인학대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여 노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모든 노인이며 사업내용은 노인인권 보호사업과 노인학대 예방사업, 노인인식 개선교육(경로효친교육 등 포함), 노인자살 예방 교육,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 등이다.

(5)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사업주체는 보건복지부 및 시도이고, 쉼터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일정기간 보호조치 및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학대피해노인이며 사업내용은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쉼터 생활 지원,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학대 재발 방지와 원 가정 회복을 위한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6) 결식 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사업주체는 시군구이고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일정한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결식 우려 노인이고 사업내용은 경로식당 무료급식,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급식사업자에게 예산 지원 등이다.

라. 노인복지시설

1) 노인복지시설의 개념과 종류

노인복지시설은 65세 이상 노인이 심신적, 사회적, 경제적 등의 이유로 생활하기 어려울 때 이용하거나 거주하는 시설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된다.

〈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2조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주거 복지시설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 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된다.

〈표〉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4조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소자 10인 이상 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입소자 9인 이내 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이 포함된다.

〈표〉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6조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여가 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 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으로 구분된다.

〈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제38조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재가노인 복지시설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주·야간 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단기 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그 밖에 재가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비스’는 아래 서비스들을 포함한다.

1.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방문간호서비스 :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재가노인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3. 복지용구지원서비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항에 기초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인복지시설로 현재(2023)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8개 시·도에 38개 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중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표〉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법제39조의5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보호 전문기관	중앙노인보호 전문기관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 -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노인보호 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에 설치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6)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복지법제23조의 2

시설 종류	시설 명	설치 목적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	노인인력 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보급사업, 조사사업, 교육·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 개발·지원, 창업·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노인취업 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 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전담기관이다.

〈표〉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노인복지법제39조의 19

시설 종류	주요 업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	-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 -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 -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 - 그 밖에 쉼터에 입소하거나 쉼터를 이용하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